

##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### 1.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 변경시 보고기한 연장(안 제4조의2)

#### 가. 제·개정 이유

- 은행법령 규제입증위원회 심의 과제로서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 변경시 보고의무를 합리적으로 정비
- 계열사가 다수 있거나 외국인이 주주인 경우 예기치 못한 사정으  
로 제 때 보고가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

#### 나. 제·개정 내용

-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이 일정수준이상 변경된 경우 금융위에 보  
고해야하는 기간을 기존 '5영업일 이내'에서 '10영업일 이내'로 연  
장

#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#### 라. 입법효과

-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 변경시 은행의 원활한 보고의무 이행을  
위한 준비기간 부여

#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## 2. 은행 국외현지법인 관련 보고의무 완화(안 제24조의2)

### 가. 개정 이유

- 은행법령 규제입증위원회 심의 과제로서 국외현지법인 관련 은행의 보고의무를 합리적으로 정비
- 제재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제재를 보고토록 하는 것은 규제 목적에 비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, 은행법상 과태료 최소한도가 200만원인 점을 고려

### 나. 개정 내용

- 은행의 국외현지법인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 금융위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나, 2천달러 미만의 경미한 제재인 경우 보고대상에서 제외

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없음

### 라. 입법효과

-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은행의 보고의무를 경감

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### 3.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위탁범위 정비(안 별표3)

#### 가. 개정 이유

- 은행업 관리·감독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는 업무범위를 정비

#### 나. 개정 내용

-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는 업무범위에 (i)영업의 양도·양수에 관한 심사, (ii)비업무용 자산 등의 보고의 접수 등을 추가

#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없음

#### 라. 입법효과

- 행정기관 내 업무위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체계적인 업무수행 체계 마련

#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특이사항 없음